신탁계약서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~ ③ (생략) -	① ~ ③ (좌동)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2. 변경(예정)일 : 2020년 09월 30일(예정)